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취소 등

### 판결요지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한 사업주로서 자신들의 일정에 맞는 시간에 작업을 시작하였고 자신들이 임금을 주는 고용자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하였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작업지시의 구체적 내용은 작업 대상과 작업내용을 개괄적으로 지적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작업방법이나 내용은 닥트 전문가인 원고 등에게 맡겨져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은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독립된 사업주이자 소외 회사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 판결이유

#### 1. 처분의 경위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변론의 전 축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김○○의 남편인 소외 전○○과 원고 장○○은, 1995. 2. 23.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염색가공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1996. 10. 11. 선고, 95구38259 판결
- 판시사항 : 닥트 제조·설치업에 종사하는 원고를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 주 문 :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장장인 소외 박○○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 공장 건조실 지붕 위의 닥트 배기통과 공장 지붕 사이의 틈을 메우는 보수 공사를 하던 중, 원고 장○○은 15:00경 작업용 전기 드릴을 작업장소로 옮기기 위해 전선을 잡아 당기다가 가로 90cm, 세로 180cm 정도 되는 채광용 프라스틱[일명 선라이트(sun-light)]을 잘못 밟아 약 4.7m 아래의 공장 바닥으로 떨어져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편 소외 전○○도 그 무렵 위 보수공사에 사용할 스레이트 조각을 주워 모으려 작업 현장 반대편 지붕 위로 갔다가 역시 그곳에 있던 채광용 프라스틱을 잘못 밟아 공장 바닥으로 떨어져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개두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같은 날 20:20경 사망하였다.

(2) 이에 원고 김○○은 1995. 3. 27. 위 전○○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같은 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를 하고, 한편 원고 장○○도 같은 달 16일 위 부상이 역시 같은 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은 1995. 4. 4. 위 망인 및 원고 장○○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김○○에 대하여는 유족보상일시

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원고 장○○에 대하여는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의 행위는 1995. 5. 1.부터 1994. 12. 22. 법률 제48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피고가 행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공장장인 소외 박○○의 구체적 작업 지시를 받고 원고 장○○ 및 소외 전○○(이하 원고 장○○ 등이라고 한다)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으므로 위 보수 작업에 관한 한 원고 장귀환 등과 소외 회사 사이에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 원고 장○○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어서, 위 작업과 관련하여 입은 위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장○○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가리는 것인 바(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 674 판결 등 참조), 원고 장○○ 등이 위 법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한 사업주로서 자신들의 일정에 맞는 시간에  
작업을 시작하였고 자신들이 임금을 주는 고용자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하였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작업지시의 구체적 내용은  
작업대상과 작업내용을 개괄적으로 지적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작업방법이나 내용은 닥트 전문가인 원고 등에게 맡겨져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은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독립된  
사업주이자 소외 회사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산업체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소정의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  
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  
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  
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  
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  
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  
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  
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  
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  
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  
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 1504 판결).

그런데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장○  
○○ 등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을 한 독립한 사업주로서 자신들의 작업 일  
정에 맞는 시간에 작업을 시작하였고 자신  
들이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소외 김○

○의 도움을 받아 위 보수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도 원고 등이 직접  
가져 왔고 위 보수 비용도 소외 회사의 사  
원 급여와는 관계 없이 상당히 높게 약정되  
었으며, 또한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작업 지  
시의 구체적 내용은 원고 등에게 작업 대상  
과 작업 내용을 개괄적으로 지적하는 정도  
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은 닥  
트 전문가인 위 원고 등에게 맡겨져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원고 등이 소외 박○○으로  
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  
아 소외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장○○ 등은 자신의 계산하  
에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장 보수 공사를  
도급받은 독립된 사업주이자 소외 회사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산업체해보상  
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장○○ 등이 소외 회  
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외비의 지급  
또는 요양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보  
험 급여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  
이 이유 없다.■